

# 2023년 박물관·미술관 육성·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

❖ 박물관·미술관 육성·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 및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박물관정책 추진력을 향상 함

## ■ 개요

### ○ 대상 및 규모

- 일 시 : 2023. 12월 중
- 대 상 : 박물관·미술관 육성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
  - 공무원 : 2명
  - 민간인 : 2명
- 훈 격 : 경상북도지사

## ■ 분야별 표창기준

### □ 민간인 표창

#### ● 자격요건

-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
- 당해 공적분야에서 3년 이상 수공한 자(※ 단, 특별공적자는 예외)
- 시책사업관련 표창은 당해사업 추진에 대한 기여도, 국가사회 및 도정업무 발전 공헌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 
※ 단체공적으로 단체장, 임원 등의 개인표창 추천 불가

## ● 제외대상

-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
- 동일공적으로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
- 표창수상 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직업 종사자(중고교생 포함)는 가급적 제외
- 성금기탁, 캠페인 참가 등 일과성 공적은 제외
-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도지사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● 기타 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준함

## □ 공무원 표창

### ● 자격요건

- 공무원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  
(임용 전 군경력, 임시직, 각종 휴직기간은 불산입)
  - 기념일 표창은 6개월 이상 당해직무를 직접 담당하여 업무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
  - 시책사업 표창은 사업실적의 종합평가결과 선발된 우수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직무를 직접 담당한 자
  - 공직관이 투철하고, 지역사회발전 및 도정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

### ● 제외대상

-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
  - ※ 제한기간 :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(불문경고 포함) 6월, 감봉 12월, 정직·강등 18월
- 주요비위(금품·향응 등 수수 및 제공, 예산 및 기금 등 횡령·배임·절도·사기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운전, 재산등록

및 주식의 취득·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)로 인한 징계·불문  
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기간이 지나더라도 추천불가

※ 기준 : 2015. 7. 1. 이후 받은 징계·형벌부터 적용

- 공·사생활을 통하여 민원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
(도박, 불륜, 사기, 강·절도, 상해)로 인한 징계·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-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
-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지사표창 이상 수상자  
※ 상장, 모범공무원, 퇴직자 표창, MMP공무원 및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
- 동일공적분야로 추천 금지
- 공·사생활을 통하여 민원 또는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도지사표창  
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## 행정사항

### ○ 추천 시 제출서류(붙임2 참조)

- ① 표창 추천대상자 명단(별첨서식 1) ※공무원, 민간인 구분 사용
- ② 공적조서(별첨서식 2)
- ③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(별첨서식 3)(공무원에 한함)
- ④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(사본)(공무원에 한함)
- ⑤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(사본)(공무원에 한함)
- ⑥ 현지조사확인서 및 이력서(별첨서식 4, 5)(민간인에 한함)
- ⑦ 정부포상 등에 대한 동의서(별첨서식 6)
- ⑧ 감사부서 비위 및 징계사실 등 조회결과 확인서(공무원에 한함)

※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의 포상란에는 추천 훈격과 동일한 표창  
이상을 기록